

2020년도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: 2020. 6. 9.(화요일)
- 방 법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김경숙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정인 위원, 오영주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0건(안건번호 제2020-40925호~제2020-41024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(☆☆☆☆☆☆☆☆, ★★★★★★★★ 등)에 불법복제물(영화)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.
- B 위원: 본 심의대상 제2020-40925호~41024호(순번 1번~100번)는 웹하드,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국내외 최신 120건의 영상저작물들임. 이들 영상물들은 최근 극장에 개봉되거나,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극장 개봉이 취소되고 VOD로 공개된 최신 영화들로서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상업목적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복제·전송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있다고 보여짐. 그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음.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삭제의 시정권고가 타당하며, 다만,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함.
- C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모두 2020년 공개된 국내외 영상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, 예컨대 영화 나쁜 녀석들: 포에버(2020), 영화 인비저블맨(2020), 영화 헌트(2020), 영화 호텔 레이크(2020), 영화 스쿠비!(2020), 영화 범털(2020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된 영상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

- D 위원: 금번 심의 안건은 국내외 최신 영상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물이 웹하드,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서 업로드 되는 등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사안들로,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0년 제9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6. 9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성호

위원 박정인

위원 오영주